

제 727 호
1979. 8.1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편 집 : 문화공보관 김 인 동
전 화 7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 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	배	
제 1348 호 :	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	3
◎ 교	시	
제 363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변경, 결정및지적승인	4
제 364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4
제 365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5
제 366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변경인가	6
제 36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	6
제 368 호 :	비료판매업등록고시	8
◎ 공	고	
제 273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종합공고	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987

제 277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.....	9
제 278 호 :	유료도로통행료징수공고.....	9
제 279 호 :	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계획인가준공.....	10
제 280 호 :	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.....	10
제 281 호 :	도시계획법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.....	11

조 례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348 호

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
징수조례중개정조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
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(별표 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79년 8 월 14 일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

유료도로노선명, 징수구간및기간

노 선 별	징 수 구 간	징 수 기 간
남산 1 호터널	자. 중구에장동산 5 의 6 지. 용산구한남동산 1) 의 1	자. 1970.8- 지. 94.12
남산 2 호터널	자. 중구장충동민족문화센터 지. 용산구이태원동군인아파트	자. 1971.1- 지. 90. 8
북 악 터 널	자. 종로구평창동산 6 의 1 지. 성북구정농동산 37 의 1	자. 1971.7- 지. 94. 1
강 변 3 로 (용비교)	자. 성북구금호 4 가동 2 의 1 지. 성동구성수 1 가동 693	자. 1971.1- 지. 83.12
남부순환도로	자. 영등포구독산동산 32 지. 영등포구신월동 16	자. 1977.8- 지. 1997.12
남산 3 호터널	자. 중구회현동 49 지. 용산구용산동 2 가 5	자. 1978.1- 지. 1999.12
금 화 터 널	자. 서대문구영천동 4 의 165 지. 서대문구대진동 2 의 29	자. 1979.8.17- 지. 1992.8.16

부

칙

이 조례는 197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제 12 조,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서울특별시고시제 363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변경, 결정및지적승인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을 다음과 같이 변경,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

1979.8.10

서울특별시장

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공용의청사	동대문구답십리동 474-6 일대	826㎡	당초결정시 면적이 1,834.1㎡였으나 착도로 인하여 826㎡로 된 것임
변경후	"	"	900.5㎡ (272.4평)	폐지 : 483.6㎡ (146.3평)
신설	"	용산구서세동 33-49	353.7㎡ (107평)	청파 1 동 사무소부지
신설	"	도봉구미아동 327-4	330.6㎡ (100평)	미아 8 동 사무소부지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서울특별시고시제 364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 (77.3.16) 에 의거

1979.8.13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

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소로	3	6m	37m	신당동 658	신당동 481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6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(건설부 고시 제 137 호(77.7.9))로
서울특별시 고시 제 213 호(79.5.17)
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
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
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(영등포구)
(관악구) 토목과에
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8.14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 위치:

(영등포구 신길동 4215번지 - 4356번지
(관악구 신대방동 368의 3호 - 499의 2호
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해군본부앞
미관광장 및 공사앞 광장공사

3. 사업규모:

해군본부앞광장 $B=20-50m$
 $L=140m$
 $A=3.752㉔$

공사앞광장 $B=25-35-50m$
 $L=400m$
 $A=2.205㉕$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:

19 . 인가일 - 1979.12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
지: 별첨생략

7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

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과

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토지조서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66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
계획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 호 (75.11.24) 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동법 시행령 제 27 조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대학교 관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8.16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
신림동 산 56-1 외 211 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 : 서울대학교

다. 사업시행면적 : 3,542,907 ㎡
(1,071,805 평)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대학교 총 장

마. 사업외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1) 착수 : 변경인가일

2) 준공 : 1979.12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

아. 위치 및 평면도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6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
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3 호 (78.7.27) 및 동고시 제 408 호 (78.8.14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동 사업(학교)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,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8.16

서울특별시장

<p>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2번지 외 5필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서울낙골국민학교</p> <p>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14,248 (4,310평)</p> 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</p>	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: 인가일로 부터 30일 이내 준공 : 1981. 6.30.</p> <p>바.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: 별첨</p> <p>사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제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</p> <p>아. 위치 및 평면도 : 별첨 (생략)</p>
---	--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소유권이외권리
신림동	672	전	813 ㎡ (246평)	강 명 식 관악구상도동 202-148	없 음
	산	임	595 ㎡ (180평)	"	"
	105-2	"	"	"	"
	-11	"	3,649 ㎡ (1,105평)	김 두 일외 1인 승로구 인의동 28-1	"
	-14	"	1,587 ㎡ (480평)	"	"
	-32	"	4,908 ㎡ (1,486평)	최 경 의외 4인 성동포구영등포동 4가 67	"
	-33	"	2,688 ㎡ (813평)	이 원 규 도봉구비야동 672-20	"
계			14,240 ㎡ (4,310평)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68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료판매
 영업등록을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비료판매업 등록고시

1979. . . .

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

서울특별시장

등록 번호	등록 또는 교부년월	판매자 주소성명 및 판매장소(소재지)	비료의종류 및 품 목	보증성 분 량	기타규격
3-2	79. 8.17	동대문구신설동 96-48 서울미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의	1. 아미노산발효 부산비료(액) 2. 아미노산발효(액) 3. 조미료(박)	전 질 소 염분농도 10 %이상	염분농도 10 %이하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3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하수도)
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 제 131 호 (78.3.29)
 로 결정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
 310 호 (78.6.22) 로 지적 고시된
 성수동-자양동간 도로 개설 공사
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
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시행
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
 동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

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
 략에 공하고저 이에 공고한다.
 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 관계인에게는 이공고로 갈음한다.
 3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시민봉사실과
 도시정비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고
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
 인에게 보인다.

가. 공람장소 :

성동구청 게시판

나. 공고기간 :

1979. 8. 3 - 1979.8.27

1979. 8.13.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1. 사업시행지
도로: 성동구성수동 1가 656-1692 번
지~성동구자양동 520-1
하수도: 성동구성수 1가 656-1692~
성동구자양동 520-1
- 2. 사업의종류및명칭: 성수동·자양동
간(도로, 하수도) 개설공사
- 3. 사업의 규모
도로: B = 20미터, L = 2,980미터
하수도: 별첨(생략)
- 4. 사업의시행자: 성동구청장
- 5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
착공: 인가일로 부터
- 6. 사용토는수용할토지: 별첨(생략)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
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7 호

KC 표시정기치분해제 광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KC 표시 정기치분해제 있는 이케입체
에 대하여 동치분을 해제하고 표시
품 생산을 계속 승인하였기 동법
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
를 공고한다.

1979.8.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: 제 1156 호
허가일자: 75.9.26
제조업체명: (주) 장안공업사
대표자: 장 병 만
소재지: 서울도봉구미아동 163-3
규격번호: 8316
품 목: 방수소켓
처분일자: 79.2.28
해제일자: 79.8.13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8 호

유료도로통행료징수공고

서울특별시관내에 유료도로를 추가
신설하여 통행료를 징수할는 유료도
로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
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공고한다.

1979.8.14

서울특별시장

- 1. 통행료의징수자: 서울특별시장
- 2. 유료도로의구간: 서대문구영천동-
서대문구대신동
- 3. 통행료의징수기간: 79.8.17-92.7.31
- 4. 통행료의 징수대상과 금액

대 상	금 액
2, 3륜차	10 원
승용차, 버스, 화물차	100 원
특수차(10톤이상화물차포함)	200 원

- 5. 통행료를 면제받는 차량
 - 가. 군용 및 군작전용 차량
 - 나.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 - 다. 교통단속차량
 - 라.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종사하는 차량
 - 마.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
 - 바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및 국민으로서 외국 사절과 그 경호용 차량
 - 사. 검찰,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용 차량
 - 아. 시내노선버스 및 서울특별시 소속 청소 차량
- 6. 통행료의 징수방법
 - 현금 또는 회수권으로 요금소에서 징수

㉠ 서울특별시 공고제 279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
계획인가 준공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1 호(77.12.12)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사업(학교)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.

- 2. 본 공사완료에 관한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8.16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9-2 외 4 필
- 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- 다. 사업시행면적: 17,172
- 리. 사업시행기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
 - 1) 착수: 1978. 1.13
 - 2) 준공: 1978.11.15

㉡ 서울특별시 공고제 280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- 1.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,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.
- 2. 환지계획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
이고 있다.

1979.8.

서울특별시

- 변경내역 -

- 가. 사업명 :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
- 나. 변경위치 : 강남구반포동 618 번지의 외 22 필, 서초동 1086 의 1 삼성동 122 의 3 와 1 번지 일대
- 다. 변경면적 : 7,737 평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81 호

도시계획법 (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) 실시계획변경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0 호 (79.6.25) 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구기동 도로 및 외교관 공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시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 본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

일반에게 공람코자 공고함.

- 2. 변경대상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- 3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8.17

서울특별시

- 공 랑 개 요 -

- 1. 사업장 위치 : 구기동 158 번지 일대
- 2. 사업명칭 : 구기동 외교관 공판단지 조성사업
- 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- 4. 사업 착공 및 준공 예정일 : 79.6-79.12
- 5. 변경내용
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단지 50,000 평방미터 중 6,900 평방미터를 제척함.
- 6. 공사구역에서 제척되는 재산의 묘지 : 별첨 재산조사

토 지 조 서

순번	소재지	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동	지번			주소	성명	
1	구기동	146-1	전	6,576	종로구신교동6-19	백귀남	구기동 146-1 (전) 9,413 ㎡ 중 일부제척
2	"	147	대	324	"	"	제척